

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(24시간 개별 지원) 제공기관 공모 공고(안)

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며,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공모를 공고합니다.

2024. 4. 29.
경상북도지사

1 사업 개요

① 목적

-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

② 법적 근거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

제29조의3(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(이하 “최중증 발달장애인”이라 한다)에게 일상생활 훈련, 취미활동, 긴급돌봄,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·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(이하 “통합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,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3 사업 주요내용

- (지원대상) 최종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**80점 이상**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'**5점 이상**'인 자로, 통합돌봄 **조정위원회**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·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
 - (신청자격)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·자폐성 장애인
- (제공서비스)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**1:1로 지원**
 - (낮활동서비스)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미있는 낮활동서비스 제공
 - (주거서비스)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지원 및 일상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
- (제공기간) **최초 3년**, 갱신신청을 통해 **최대 5년**
 - *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갱신신청 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총 2회 (회당 1년) 연장 가능하여, 최대 5년간 이용 가능
- (제공요일) 월요일부터 금요일 (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)
 - (제공시간) 09:00~17:00(주간) 17:00~09:00(야간)
 - * 단, 월요일 7시 시작, 금요일 20시 종료
- (본인부담금)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
 - * 제공기관은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(식비, 생활비, 프로그램 활동비, 송영비 등)

4 제공기관 주요 역할

-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
-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(회계, 노무 관련) 수행
- 사업 모니터링·평가 시 협조 및 결과보고(제공기관 → 지방자치단체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)
-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과 연계 운영
-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·설문 응답 등
- 예산 집행 및 정산·결과보고
- 사업 홍보

5 제공기관 지원예산

제공기관	단위	예산 지원규모	지원방식
경상북도 동부(서부)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	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(이용정원 10인)	1,021백만 원 (이용정원 10명 기준) (국비 50%, 도비 50%) + 최중증 주간 그룹형 바우처 수익금 (1인당 시간당 단가 24,220원)	단년도 지급

* 이용정원에 따라 1인당 예산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6 제공기관 위탁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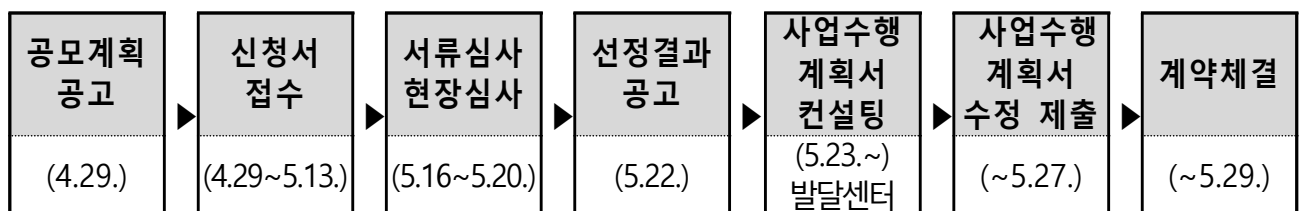
- 위탁기간 : 3년 이내

7 추진체계

- (보건복지부) 주요정책 결정, 사업지침 개발 등 사업 총괄
- (경상북도) 기초지자체 총괄, 제공기관 공모·선정 및 관리·감독 등
자원조사, 서비스조정위원회 설치, 예산 교부 등
- (시·군) 사업 운영·관리·감독,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결정 및
통보, 서비스 이용자 발굴 등
- (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)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·배포,
제공인력 교육 및 사업 현장지원, 정보시스템 개발·운영지원 등
- (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) 서비스조정위원회 운영지원, 선정자 제공
기관 배치 및 대기자 관리, 제공인력 교육, 컨설팅 등

* 상세 추진체계는 「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」 참조

8 추진일정(안)



* 단,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1 신청 자격

- 최종중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,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**비영리법인**

※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·등록·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※ 비영리법인이란, 사단법인, 재단법인, 특수법인(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 등)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

2 신청 단위 및 신청 유형

- 이용자 정원 10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이 신청하되, 단독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 가능

구분	내용
단독수행	비영리법인에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 - 단, 낮활동공간과 주거공간은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함
컨소시엄 수행*	둘 이상의 다른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 - 단,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필요

* 도내 소재지의 기관 참여 가능

3 예산 지원 방식

-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 체결 후 **보조금 지원**

* 컨소시엄의 경우, 도와 대표법인이 계약체결 후 대표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며 대표 법인은 컨소시엄을 맺은 다른 법인에게 예산 배분

-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군에 최종중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신청·지정 후 **바우처 수익금 예산 활용**

* 지정 후 24시간 개별 지원 또는 24시간 개별주간 그룹 병행 지원 여부는 시군 관리 필요

- 도는 시·군에 해당기관의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

4 제공기관 시설 기준

※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서비스 제공 시까지 시설 기준 충족 가능

1) 공통사항

- 제공기관은 공공위탁, 무료임차, 자가, 전세,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, 전대차 등은 불가능
- 통합돌봄서비스 수요,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, 교통 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
- 낮활동 제공기관과 주거공간이 분리된 경우, 각 시설간의 거리는 30km 이내로 제한
-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
- 제공기관의 내·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, 보건·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
-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,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
- 제공기관은 내·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

2) 낮활동 제공기관

* 상세 내용은 「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」 참조

- (활동공간)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m² 이상, 1인 추가시 9.9m²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함

* 사무실, 심신안정실,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,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

- (심신안정실)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,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(6.6m² 이상)
- (사무실) 활동공간과 분리하여야 하며, 타 사업 사무실과 겸용 가능

3) 주거공간(한 주택당 입소인원 최대 3인)

- (개인침실) 1인 1실 사용해야 하며,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함
- (거실) 1명당 최소 3.3m² 이상 확보하여야 함
- (욕실 및 화장실)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
- (부엌) 음식준비, 요리하기, 식사, 간식 먹기 등을 위한 공간
- (사무 및 휴게공간) 종사자가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

5 제공기관 인력 기준

- (자격요건)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(1급, 2급)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4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5)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
- 6)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- 7) 「평생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8) 1)부터 7)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
- 9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

*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~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

- (인원)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:1 매칭과 종사자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

< 이용자 수 대비 종사자 수 예시 >

이용자 수	종사자 수					
	관리자 (팀장)	낮활동지원		주거지원		총 합계
		기본제공 인력	추가인력	기본제공 인력	추가인력	
10인	1	10	3	20	3	37

6] 제공기관 선정 기준(안)

영역	평 가 항 목	설 명	배점
수행 기관 적합성 (30)	1.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전문성	-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?	5
	2.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	- 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는가? -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규모를 확보하였는가?(활동공간, 심신안정실 등) - 사업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가? -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는가? (자부담으로 주택 마련 시 가점)	10
	3. 조직체계 및 인력	-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? - 대체인력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?	10
	4. 안전 관련 대응체계	-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? -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준비되어 있는가?	5
사업 계획 타당성 (55)	5. 사업 이해 및 추진체계	-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 하고 있는가? - 컨소시엄의 경우, 컨소시엄의 구성과 운영계획은 적절한가?	5
	6. 사업 운영 절차	- 이용자 초기면담, 오리엔테이션, 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가? - 사례회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? -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?	5
	7. 서비스 제공계획 구체성	-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? -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, 보호자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? - 송영서비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?	15
	8.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	-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?	5
	9. 지역사회 네트워크	-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는가? -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가?	10
	10. 종사자 관리	- 종사자 구성, 종사자 근무 체계, 교육 등 종사자 고용·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있는가?	10
	11. 추진일정	- 월별 사업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?	5
예산 계획 타당성 (15)	12. 예산 집행계획	-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?	10
	13. 자원 조달계획	-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가? - 기관 규모가 자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?	5
총합			100

7 심사 및 선정 절차

- (1단계: 적격 심사)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
- (2단계: 선정위원회 심사) 위원장 1인(도 소속 관계공무원)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정
 - 위원은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,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불가
- 선정결과 통보 : 2024. 5. 00. 예정(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)

8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- 제출기간 : 2024. 4. 29.(월) ~ 2024. 5. 13.(월)
- 선정개소 : 2개소(동부권역 1, 서부권역 1)



* 동부권역(11개 시·군) : 포항, 경주, 영천, 경산, 청송, 영양, 영덕, 청도, 봉화, 울진, 울릉

* 서부권역(11개 시·군) : 김천, 안동, 구미, 영주, 상주, 문경, 의성, 고령, 성주, 칠곡, 예천

- 접수방법 : e-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+ 직접 제출(방문·우편 접수)
 - ※ 접수 전 반드시 유선 연락(※ 054-880-3769)
- 제출처 : 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(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)
- 제출서류

제출 서류 목록		비고
①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공모 신청 공문		자유 양식
②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 1부		-
③ 법인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		-
④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		붙임1
⑤ 컨소시엄 구성 현황표 1부 (컨소시엄 구성한 경우에만 제출)		붙임2
⑥ 기관소개서 1부		붙임3
⑦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1부		붙임4
⑧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		붙임5
⑨ 그 밖에 선정권자가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		

* 단, 상기 제출서류는 심사 운영상,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- 문의처 : 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 박선용 주무관(☎054-880-3769)

9 기타사항

- 재공고 : 공고결과 권역별 신청기관(단독 또는 컨소시엄)이 1개인 경우 재공고를 하되, 재공고 후에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
- 이의제기 :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
-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,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
- 모집공고, 지침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최종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권한이며,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
-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,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경상북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
-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, 중앙·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·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, 모니터링, 평가 등 관리·감독에 응해야 함

3 향후 추진일정

※ 추진일정은 내·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공고 및 접수 : '24. 4. 29.(월) ~ '24. 5. 13.(월) (15일간)
- 심사 및 수행기관 선정 : '24. 5월 중
- 사업계획서 수정 : '24. 5월 중
- 사업계획서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(1차) : '24. 5월말
- 사업 실시 : '24. 6월
- 중간보고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(2차) : '24. 7월 중